

제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2. 7. 19.(목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
홍성규 부위원장

김충식 상임위원

신용섭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○ 의결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1호에 따른 제2009-30차 전원회의('09.7.9), 제2010-1차 전원회의('10.1.14), 제2011-17차 전원회의('11.3.21), 제2011-67차 전원회의('11.11.30)에서 의결한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'에 해당됨

○ 보고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1(서면보고)제1항에 따른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'의 안건에 해당됨

② 의결사항

가.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- (2012-41(서)-147)

- 「방송법」 제35조제2항 및 「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사임에 따른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전경희 변호사를 위촉하기로 의결함

※ 임기 : 전임자의 잔여임기(2012. 7. 19. ~ 2012. 12. 19)

나. 단체수신 계약시 개별세대 가입동의 미이행 사업자 제재조치에 관한 건 - (2012-41(서)-148~163)

-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의거, 케이블TV 단체수신 계약시 개별세대의 가입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을 청구하는 등 시청자 불만을 유발한 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< 해당 사업자명 및 조치내용 >

사업자명	위반내용	조치내용	적용법령
(주)씨제이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아라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중앙방송, (주)씨앤엠경기케이블티브이, (주)현대에이치씨엔부산방송, (주)현대에이치씨엔새로넷방송, (주)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,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(주) 등 8개사	단체수신 계약시 개별 세대 가입동의 미이행	경고	방송법 제100조 제1항제4호
(주)씨제이헬로비전가아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금정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마산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중부산방송, (주)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, (주)씨앤엠울산케이블티브이, (주)씨엠비 광주방송, (주)씨엠비한강케이블티브이 등 8개사	"	주의	

다.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등록, 변경등록 및 승인에 관한 건

- (주)머니투데이방송 등 3개사 - (2012-41(서)-164)

-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18조제2항, 제17조제5항 등에 따라 (주)머니투데이방송, (주)IB미디어넷, 케이티하이텔(주) 3개사가 신청한 방송 콘텐츠사업 신규 등록, 변경등록 및 승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<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등록, 변경등록 및 승인 내용 >

법인명	채널명	콘텐츠 공급분야	대표자	편성 책임자	최대주주 (지분율)	납입자본금 (실질자본금)	비고
(주)머니투데이방송	MTENT (Money Today ENTertainment)	오락, 교육	홍선근 현병택	현병택	(주)머니투데이 (60%)	98억원 (58억원)	신규등록 (데이터방송)
(주)IB미디어넷	IPSN (IPTV Sports Network)	스포츠 / 연동형 TV 전자상거래	김정환	임형빈	IB스포츠(주) (100%)	20억원 (17억원)	변경등록 (TV 전자상거래)
케이티하이텔(주)	Sky T쇼핑 스카ით쇼핑	상품소개 및 판매 전문 데이터방송	서정주	정훈	(주)케이티 (66%)	2,369억원 (345억원)	승인 (기승인사업자)

라. 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, 변경허가, 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」(고시) 제정에
관한 건 - (2012-41(서)-165)

- ‘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방송
광고판매대행사 허가 등의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원안대로
의결함

○ 주요내용

① 허가신청 방법 및 절차 (안 제3조 ~ 제6조)

- 허가신청 자격요건, 허가신청서 구비서류, 허가신청서의 접수방법 및 신청서류의
보정 절차를 마련

② 허가기본계획 수립 (안 제7조)

- 허가심사를 위해 심사일정, 심사반 구성·운영, 심사위원 선정방법 등 기본계획
수립을 규정

③ 허가심사 기준 및 방법 (안 제8조 ~ 제9조)

- 각 심사항목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으로 하고, 총점은 70점 이상을
받은 신청법인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

④ 허가심사 기간 (안 제10조)

-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를 위한 심사기간은 허가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
이내로 하며, 30일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

⑤ 허가심사위원 구성 및 자격 (안 제11조)

- 허가심사위원은 방송, 광고, 법률, 경영·경제,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
풍부한 전문가를 20명 이내로 구성·심사함

⑥ 변경허가·최다액출자자 승인·재허가 (안 제14조 ~ 제19조, 제21조 ~ 제23조)

- 변경허가·최다액출자자 승인·재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및 처리절차
등을 규정 (허가절차 준용)

⑦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MBC 네트워크 지원방안 승인 (안 제20조)

-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MBC 네트워크 지원방안에 대해
방통위 승인절차를 규정

○ 위원회 보고 후 변경사항

- 허가심사전에 허가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허가심사 대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규개위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조항 삭제
- 지역민방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시 광고매출배분 관련 지역민방 의견서 첨부, 허가심사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근거를 규정

○ 향후 일정

- 관보게재 의뢰 : '12년 7월 20일

마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- 티켓초이스 등 106개사

- (2012-41(서)-166)
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을 위반한 106개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(안)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위반내용

- 106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,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거나, 개인정보 전송구간에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음

② 시정명령 내용

- 106개 사업자는 '12. 9월 30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

※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공중에 유출되거나 노출되지 않았고, 이전 3년간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, 「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」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우선 부과

③ 보고사항

가.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심사 추진에 관한 사항

-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의거, 이동통신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심사 계획(안)을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 내용

① 주요 심사항목

-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물리적·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, 재정적 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평가

- 심사항목 세부사항은 [붙임1] 「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제정(안)에 따라 진행하도록 함

② 심사 절차

- (심사위원회 구성) 고시(안)제9조에 따라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
- (심사) 서류심사를 통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이 심사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, 부합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
- (의결) 지정심사 결과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, 지정 신청자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를 통보

○ 향후 일정

- 사업계획서 접수 : ~ '12. 7.31
- 심사 (서류심사 및 현장실사) : '12. 8월 1주 ~ 2주
- 위원회 의결 : '12. 8월 3주

나.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하위고시 제 개정에 관한 사항

-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 개정안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 내용

① 「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·절차·수수료에 관한 지침」 개정안

-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고시 명칭을 「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·절차·수수료에 관한 지침」을 「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」으로 개정
- 정보보호 안전진단과 관련된 고시 사항을 일괄 삭제(舊 고시 제3조~제11조, 별표 2~3, 별지1~6 삭제)
-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관리적·기술적·물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행화(안 별표1)
- 정보보호최고책임자, 법·규제사항 준수, 정보보호 현황공개, 정보보호 투자 촉진, 보안관계 운영, 중요정보 유출방지 등 보안관리 기준 추가
- ※ 36개 항목(48개 통제사항) → 42개 항목(57개 통제사항)으로 확대

② 「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」 전부 개정안

- (인증기관 지정신청) 지정대상 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, 기관수, 신청자격 등을 정하여 공고하고,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, 심사원 보유현황, 업무수행요건·능력심사 서류를 제출토록 함(안 제3조)

- (지정심사 세부기준) 인증기관 지정심사시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요건·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(안 제4조)
- (인증기관 사후관리) 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,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및 인증실적 보고서 등 필요한 서식을 정함(안 제7조, 제8조)
- (인증심사원 자격) 심사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, 자격 취득 절차, 유효기간 및 취소기준을 마련(안 제9조 ~ 제13조)
- (인증 의무대상자) 법령으로 정한 의무대상자를 재정의하고, 영세한 집적정보 통신시설 재판매사업자(VIDC)는 대상에서 제외함(안 제14조)
- (인증 신청)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2개월 이상 운영한 후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 및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토록 함(안 제15조 ~ 제17조)
- (인증 기준) 기업보안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통제 항목에 대한 세부기준을 104개로 개정함(안 제18조)
- (인증심사 방법) 인증심사 수행시 선임심사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인증심사팀을 구성토록 하고, 세부 심사방법을 마련함(안 제19조, 제20조)
- (인증위원회 운영·운영) 최초심사, 갱신심사 및 인증취소를 심의하기 위해 10인 이내의 인증위원회를 구성·운영토록 함(안 제21조, 제22조)
- (인증의 관리 및 홍보) 인증서 및 추가발급 신청서, 변경신청서 등 서식을 제정하고 인증의 홍보를 위한 표지를 정함(안 제23조 ~ 제25조)
- (인증심사 수수료) 수수료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영세업체 등에 대한 수수료 할인 근거를 마련(안 제26조, 제27조)

③ 「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」 제정안

- (사전점검 시기)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정보통신망의 구축 또는 서비스 개시 이전에 실시토록 함(안 제3조)
- (사전점검 권고) 방통위로부터 인가·허가, 등록·신고 사업 또는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,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, 제5조)
- (수행기관 지정절차)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건을 정하고,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(안 제6조 ~ 제14조)
- (수행인력 자격요건) 사전점검을 수행하는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,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, 제16조)

- (사전점검 수행절차) 계약, 사전점검 준비, 설계 검토, 보호대책 적용, 보호대책 구현 현황 점검 및 시험, 결과 정리 등의 순서로 진행함(안 제17조 ~ 제24조)
- (사전점검 수수료) 사전점검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는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되 계약에 따라 다르게 합의한 경우 기준을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(안 제26조)

○ 향후 일정

- 관계부처 협의, 입안예고 ,규제심사 : '12.8월
- 전부개정안 위원회 의결 : '12.10월